



2026년 경기 지역문화 지원 통합공모

<2026년 경기 지역문화 지원 통합공모> 자주하는 질문

1	공모사업 안내	-----	1쪽
2	지원신청 유의사항	-----	2쪽
3	예산편성 기준 및 집행·정산 지침	-----	4쪽
4	자주하는 질문	-----	7쪽

1 공모사업 안내

I 공모개요

구분	공모사업명	지원대상	지원규모
1	경기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: 리서치형	경기도 거주/소재 개인 및 단체 (문화예술, 문화기획, 지역활동 등)	최대 200만원 (10건 내외)
2	경기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: 프로젝트형	경기도 소재 단체 (문화예술, 문화기획, 지역활동 등)	최대 2,000만원 (14건 내외)
3	경기 생활문화 플랫폼 지원	문화원, 문화의집, 생활문화센터, 평생학습원, 민간 문화공간, 문화예술단체 등 생활문화 유관단체 ※ 지원 대상 지역 : 가평, 동두천, 성남, 시흥, 안성, 안양, 양주, 연천, 오산, 이천, 의왕, 의정부, 하남(13개 시·군) 소재 단체를 대상으로 함	최대 1,200만원 (13건 내외)

※ 경기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내 유형별 복수 신청 불가(①리서치형, ②프로젝트형)
지역문화와 경기 생활문화 플랫폼 지원사업 간 복수 지원 가능하나 동일한 내용의 사업으로 신청 불가

⇨ 지원사업별 세부 내용은 '공고문' 2026년 경기 지역문화 지원 통합공모'를 참고해주세요.

1.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

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
- 국립·공립(도·시·구·군립) 문화예술 기관·단체와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
-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
- 학교, 종교기관, 친교기관 등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
-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, 단체(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 기준을 따름)
-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했거나 관련 법령 규정을 위반한 개인 및 단체
-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인, 단체
- 접수 마감일까지 2025년 경기문화재단 정산보고서를 미제출한 개인 및 단체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
-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개인,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개인, 단체

2.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
(한국문화예술위원회, 지역문화진흥원, 영화진흥위원회, 한국콘텐츠진흥원, 지역문화재단 등)
- 정치적, 종교적 목적의 사업
-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
- 시설의 건립과 매입, 재건축 사업
- 기금 적립과 용자 지원사업
-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

- 경기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유형별(①리서치형, ②프로젝트형) 복수 신청은 불가합니다.
- 타 기관 및 재단에서 본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, 선정 과정 및 이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 취소(환수)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신청서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을 통해 접수하며 우편, 방문 및 이메일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.(개인은 개인 계정으로, 단체는 단체 계정으로 접수)
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첨부파일 용량이 100MB 초과할 시 파일이 등록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제출자료는 컴퓨터파일(100MB이하) 1건의 PDF파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- 접수 마감 당일은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제출 바랍니다. 접수 기간 내에 지원신청이 되지 않았을 경우 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. 접수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한 서류는 추가 접수가 불가합니다.
- 서류심의 결과 및 최종 선정 결과는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심의에서 탈락한 신청단체(개인)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.
- 최종 선정 공고 시 심의총평을 공개하며 개별 심의평은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신청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시 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.
- 지정서식 외 다른 서식의 파일로 제출할 경우 결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.
-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및 동의서 작성 시 (인/서명)란 서명하여야 합니다.
(도장 및 서명 스캔한 서명, 마우스로 작성한 서명, 정확한 서명만 가능)
- 예산 편성, 집행 및 정산은 각 지원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.
- 선정된 단체는 먼저 지급보증보험(지원사업 이행 보증) 가입이 완료되어야 교부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. 선납한 보험료의 경우, 추후 지원금 내에서 보전됩니다. 지급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, 본 지원사업 선정이 취소됩니다.
- 제출서류 내 허위사실, 부적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사업취소, 지원금 환수될 수 있습니다.
- 당초 계획과 달리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.
- 사업 결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지원사업 결과물은 온라인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
3 예산편성 지침

○ 지원금 운영 및 관리

- 지원금 300만원 이하의 경우 정산 간소화 진행
- 지원금 전용 통장을 운영하여 관리(1사업 1통장)하며 지원금 계좌와 연결되는 체크카드 발급 기준에 보유한 통장 사용가능하며 반드시 '0원'인 통장이어야함
- 지원금의 집행 증빙서류 제출 필수(증빙이 불가능할 경우, 해당 금액은 환수 요청)
- 현금 인출 및 현금결제 불가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만 사용가능
- 원천세 등 세금 신고는 사업 기간까지 마감되어야 하며, 이를 위해 매월 원천세 신고 및 납부
- 사업기간 종료 후 지원금 잔액 및 이자 반납 의무

○ 지원금 예산 편성 지침

※ 항목별 예산 규모에 제한은 없으나, 사업계획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고려하여 보편타당한 수준에서 편성

목	세목	내 용
일반 수용비	용역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획사, 대행사 등 외부 전문 업체를 활용한 용역비 -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거래할 때 - 디자인, 영상물 제작, 홍보 및 광고 대행, 구매(제작용역) 등 - 업체, 세부 거래 내역 등 추가 자료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및 계약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	사례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기획비, 연구비, 강사료, 원고료, 인터뷰 수당 등 각종 수당과 인건비 (일반 개인 대상) - 원천세(사업3.3%/기타8.8%)를 포함한 금액으로 편성 - 예술인고용보험 해당 시, 예술인부담분의 보험료(0.8%) 포함한 금액으로 편성 - 인건비 지급 시에는 원천세와 (해당 시)예술인고용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이체 - 지급 후 원천징수 및 (해당 시)예술인고용보험료 신고 납부 필수 - 예술인 고용보험 자체 부담 시(지원금 활용하지 않을 경우) 증빙 불필요
	홍보 및 마케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홍보 마케팅을 위한 각종 온-오프라인 홍보물 제작, 디자인, 광고비 등 - 세부 제작 내역과 홍보물 제작 결과물 증빙 - 광고의 경우 광고 추진내역, 결과물 증빙 ※ 온라인 플랫폼 광고비의 경우 세금계산서, 카드 영수증을 수령할 수 있는 정식 광고에 한하여 집행 가능
	제작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영상, 음악, 무대, 소품 등 각종 제작비 - 자산으로 취득 목적의 제작비는 편성 불가
	재료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 재료 일체 - 재료비(소모품) 구입 시 사진 증빙자료 첨부 - 자산 취득성 물품 구입은 불가하며, 임차 또는 대여 권장
	발간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도록 및 자료집 제작 등 인쇄를 책자, 전자책 발간비
기타 운영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본 지원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기타 비용 - 프로그램 진행 다과비 및 회의 식음료비 등 	
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규모로 발생하는 우편료, 택배 발송, 퀵서비스, 행사보험료, 이체 수수료 등 - 예술인 고용보험료(해당 시에만 예산 편성) ※ 예술인고용보험의 자세한 사항은 예술인복지재단 사이트 참조 http://kawf.kr/ - 지원금 회계검사 수수료 *지원금 300만원 이상인 경우 필수 편성 <회계검사수수료 단가 기준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사업규모</th> <th>수수료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7백만원 ~ 1천 5백만원 미만</td> <td>226,000</td> <td rowspan="2">부가세 포함</td> </tr> <tr> <td>1천 5백만원 ~ 2천만원 미만</td> <td>302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회계검증 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함 - 지급보증보험료(지원사업 이행 보증) *지원금 300만원 이상인 경우 필수 편성 지원신청액의 0.035%~0.232%이며 단체/사업자 신용도에 따라 보험료 설정됨(초저 15,000원) 	사업규모	수수료	비고	7백만원 ~ 1천 5백만원 미만	226,000	부가세 포함	1천 5백만원 ~ 2천만원 미만	302,000
사업규모	수수료	비고								
7백만원 ~ 1천 5백만원 미만	226,000	부가세 포함								
1천 5백만원 ~ 2천만원 미만	302,000									
임차료	대관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시관, 공연장, 연습실 등 공간 대관료 - 단체 자체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임차비 책정 불가 								
	임차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장비, 소품, 기자재, 차량 임차 등 임차료 - 계획한 프로그램 내용 및 회차에 맞는 기간 및 재료.기자재 임차 - 장비, 소품, 의상 대여비 등 								

○ 지원금 집행 및 정산

- 교부 이후 사업 기간 내 지원금 집행, 교부 전 집행액은 지원금으로 보전 불가(지급보증보험료만 가능)
- 지원금은 체크카드 결제와 계좌이체로만 집행 가능하며 집행 증빙서류 제출

<지원금 집행 제출 증빙서류>

집행수단	구분	번호	필요서류	발급방법
체크카드	필수	1	체크카드 영수증	거래처, NH농협카드
		2	(영수증에 세부내역 없을 시) 견적서, 거래명세서	거래처
	해당 시	3	(회의, 행사의 경우) 회의 및 행사일지	재단 지정서식
계좌이체	필수	1	이체확인증	은행
		2	전자(세금)계산서	거래처
		3	견적서(거래명세서)	거래처
	해당 시	4	현금영수증	거래처
		5	(회의, 행사의 경우) 회의 및 행사일지	재단 지정서식
계좌이체 (사례비)	필수	1	이체확인증	은행
		2	표준계약서	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서식
		3	사례비 지급 내역서	재단 지정서식
		4	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	홈택스, 세무서
		5	국세 납부 영수증	홈택스, 은행, 세무서
		6	지방세 납부 영수증	위택스, 은행, 세무서
	해당 시	7	사업(기타)소득 원천징수영수증 (지급명세서)	홈택스, 세무서
		8	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	홈택스, 세무서
		9	예술인 고용보험 완납 증명원	근로복지공단

○ 지원금 집행 불가 내역

- 지원금 집행 불가 항목이 지출되었을 시, 해당 금액 환수 조치

인정불가 경비 목록	세부 내역
자산취득성 물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가구(책상, 의자, 선반 등) ■ 전자기기(마이크, 카메라, 보조배터리, PC, 프린터 등) ■ 악기 ■ 각종 집기류(거울, 화분, 서랍, 카메라 삼각대 등)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자산취득성 물품 구입 적발 시 재단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 ※ 자산취득성 물품에 해당되는지 미리 재단과 협의 필수(자의적 해석 불가) ※ 자산취득성 물품의 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: 소모품(조달청 고시 내구연수 기준 내구연한 1년 미만 취득단가 20만원 미만)이 아닌 물품 : 관련 근거 : 「물품관리법」 제19조, 조달청 고시 「물품분류지침」 제2조
프로그램 운영과 관계없는 단체·기관의 운영 경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상근인력에 지급하는 인건비 ■ 사무실 임대료, 시설비, 수선비 (공간조성형의 경우 사용 가능) ■ 본 사업 운영과 무관한 사무용품, 공과금, 전화요금 등
시혜성 물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프로그램 참여자 사례성 선물용품 ■ 행사기념품 구입비, 상금, 사례금
과도한 식·음료비 (다과비&회의식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매회 식사료 지출은 지양 ■ 참여자 수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■ 사업참여인력 외 다른 인력의 식비까지 지출한 경우 ■ 식비 책정한다 이상을 지출한 경우
주류 및 유흥성 지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주류 구입 불가 ■ 회의식비가 아닌 회식성(심야시간) 지출 불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회의식비 지출 시 회의일지 작성 및 제출 필수(재단 서식)
경기문화재단과 협의되지 않은 인건비 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전 승인 받지 않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불가 ■ 실제 참여하지 않은 인원에게 지급 불가 ■ 동일 인력에게 여러 항목의 인건비 중복·교차 지급 불가
참여 인력 및 단체 명의의 사업체에 사업비 집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 참여 인력 및 단체와 관련된 사업체(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사 포함)에 모든 사업비 집행불가(추후 발견 될 경우 전액 환수 조치)
기타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지원금(보조금) 통장 이자 반납 수수료 ■ 공인인증서 발급 비용 ■ 임차 기자재 중 본 사업 외 용도가 더 큰 기자재 임차 시 사전에 재단 담당자와 협의 필수 ■ 교부신청에 제시되지 않은 비소모품 구입 불가

4 자주 하는 질문

구분	질문	응답
공통 사항	전자우편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한가요?	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우편, 우편접수, 방문 접수 모두 불가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www.ncas.or.kr)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지원만 가능합니다. - 온라인 접수 방법은 공고문 내 [붙임2] 파일 확인 바람 - 개인 지원의 경우 개인 계정으로, 단체 지원의 경우 단체 계정으로 지원
	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가 무엇인지?	<input type="checkbox"/>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관리 운영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(NCAS)은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금을 신청하고 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. - 본 지원사업은 지원신청서 제출 시에만 NCAS 시스템을 사용
	필수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?	<input type="checkbox"/> 지원신청서(지정서식) 제출하여야합니다. - 경기문화재단 누리집(https://www.ggcf.kr/)에서 다운받아 작성 "2026년 경기 지역문화 지원 통합공모"로 검색 - 지원사업별 지원신청서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,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, 주민등록초본 또는 단체확인증(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) 반드시 첨부(붙임3~5) (※ 미첨부시 행정 심의 탈락)
	지원금 통장과 체크카드는 새로 만들어야 하나?	<input type="checkbox"/> 지원사업별로 전용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.(1개 사업당 1개 전용 통장) - 타 지원금 혼용 절대 불가 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기관 상관없이 기존 사용하던 잔액이 없는 통장도 사용 가능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지원금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급하여야합니다.(신용카드 불가)
	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 받을 수 있나요?	<input type="checkbox"/> 현재 다른 지원사업에 동일한 내용으로 선정된 사업의 경우 신청 불가하며 선정된 이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지원사업에 신청 불가합니다.(중복지원불가)
	예산 편성시 자부담을 하고 정산해야하는지?	<input type="checkbox"/> 자부담 편성은 필수가 아닙니다. 다만 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원금이 부족할 경우 자부담분 편성 가능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자부담을 편성했을 시 자부담 정산은 필요 없으며 회계검사 시에는 재단 지원금만 검사하면 됩니다.(재단지원금액 기준으로 회계검사수수료 편성)
	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'수익금'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?	<input type="checkbox"/> 선정단체의 자산으로 취득 불가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프로그램 참가비, 행사 물품 판매비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 사업비에 편성해서 전액 지출해야 하며, 수익금은 정산 대상이며 회계검사 필수입니다.(증빙 제출 필수)
	지원금 사용 금지 항목이 있나요?	<input type="checkbox"/> 예산편성 지침(p.6) 확인해 주십시오. - 주류 구입 및 주류 판매점(술집, 치킨집 등) - 자산성 물품 구입(소모성이 아닌 물품) 등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자산성 물품이 필요한 경우 임차 가능 ※ 사업 정산 과정에서 금지 항목 구입이 발견되었을 경우 환수
	선정된 후 사업의 계획이나 예산을 변경할 수 있나요? e나라도움이나 보탭e를 사용하나요?	<input type="checkbox"/> 당초 사업의 목적, 규모 및 내용이 크게 변경되지 않는 선에서 변경 가능합니다.(재단 담당자와 사전 협의 필수) 다만 경우에 따라 선정 취소나 지원액 감액 등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지원금 집행, 정산 시 e나라도움이나 보탭e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재단 서식에 맞춰 지원금을 정산하며 회계법인을 통해 정산 검증합니다.

구분	질문	응답															
경기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	25년도 경쟁률은 어떤가요?	<p><2025년 경기 지역문화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률 및 경쟁률>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지원사업 유형</th> <th>접수건수</th> <th>선정건수</th> <th>선정률</th> <th>경쟁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리서치형</td> <td>48건</td> <td>10건</td> <td>20.8%</td> <td>4.8 : 1</td> </tr> <tr> <td>프로젝트형</td> <td>191건</td> <td>9건</td> <td>4.7%</td> <td>21.2 : 1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지원사업 유형	접수건수	선정건수	선정률	경쟁률	리서치형	48건	10건	20.8%	4.8 : 1	프로젝트형	191건	9건	4.7%	21.2 : 1
	지원사업 유형	접수건수	선정건수	선정률	경쟁률												
	리서치형	48건	10건	20.8%	4.8 : 1												
	프로젝트형	191건	9건	4.7%	21.2 : 1												
	25년도 사업 내용을 볼 수 있나요?	<input type="checkbox"/> 경기문화재단 누리집-[지역]-[지역문화]에서 사업결과물 확인가능합니다. * 바로가기 링크: https://www.ggcf.kr/pages/RegionalCultures															
	경기도에서 활동하면 지원 가능한가요?	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상 경기도에 거주해야하고, 단체의 경우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해야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실제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경기도에서 활동하지만, 경기도 외 지역에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.(주민등록초본, 단체확인증 확인)															
	거주지/소재지에서 사업을 해야하나요?	<input type="checkbox"/> 거주지나 소재지에 상관없이 경기도 지역에서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만 지역사회와의 관계성과 지속성이 평가에 고려됩니다.															
	연속지원 가능한가요?	<input type="checkbox"/> 최초 선정 후 자동으로 3년 연속 지원되지 않습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신청 시 매해 공모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가능하며 연속 지원 시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가 심의에 반영됩니다.															
처음 지원할 때는 꼭 리서치형부터 지원해야 하나요?	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 지원 시 사전 준비 상황 및 추진 단계에 따라 '프로젝트형'에도 지원 가능합니다.																
연속 지원할 때 다른 유형으로 바뀌서 지원해도 되나요?	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신청 시, 연차에 따라 유형을 변경해서 지원 가능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'리서치형'의 경우,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사전 단계의 지원이므로 리서치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. ※ '리서치형'은 3차년도에 지원 불가합니다. 예) (1차년) 리서치형 - (2차년) 프로젝트형 - (3차년) 리서치형 (x)																
지원금 300만원 이하의 경우 정산 간소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?	<input type="checkbox"/> 별도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회계 검증을 하지 않으며 정산 결과보고서 (재단 서식)로 갈음합니다. - 지원금을 지출한 세부 영수증 등은 별도 요청하지 않음 - 단, 지원금 정산을 간소화한 만큼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 예정 - 제출서류 미제출, 증빙자료 불충분, 서류 미비 등은 지원금 집행 세부 증빙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음																
경기 생활문화 플랫폼 지원	여타 생활문화 관련 사업과 차이는 무엇인가?	<input type="checkbox"/> 경기 생활문화 플랫폼 지원사업은 동호회 지원사업이 아니라 여러 단체가 연계하고 협력하여 지역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 가는 방식에 집중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단순히 생활문화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보다는 새로운 방식의 연계-협력을 통해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, 그 결과 생활문화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구성이 필요합니다.															
	25년도 사업 내용을 볼 수 있나요?	<input type="checkbox"/> 경기문화재단 누리집-[지역]-[생활문화]에서 사업결과물 확인 가능합니다. * 바로가기 링크: https://www.ggcf.kr/pages/Communities															
	25년도 경쟁률은 어떤가요?	<p><2025년 경기 생활문화 플랫폼 공모사업 선정률 및 경쟁률>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</th> <th>접수건수</th> <th>선정건수</th> <th>선정률</th> <th>경쟁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생활문화 플랫폼</td> <td>89건</td> <td>15건</td> <td>16.8%</td> <td>5.93 : 1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접수건수	선정건수	선정률	경쟁률	생활문화 플랫폼	89건	15건	16.8%	5.93 : 1					
	접수건수	선정건수	선정률	경쟁률													
생활문화 플랫폼	89건	15건	16.8%	5.93 : 1													

구분	질문	응답								
	경기도에서 활동하면 지원 가능한가요?	<input type="checkbox"/> 실제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경기도에서 활동하지만, 경기도 외 지역에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.(단체확인증 확인) <input type="checkbox"/> 또한 단체 사업장이 지원 대상 지역(도내 13개 시군)에 소재해야 합니다.								
	사회적기업도 지원 가능한가요?	<input type="checkbox"/> 생활문화 유관단체 중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 등 지원 가능합니다.								
기타 문의 사항	기타 문의 사항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문의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사용 방법 문의</td> <td>1577-8751 평일9~18시(점심시간12~13시 제외)</td> </tr> <tr> <td>경기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문의</td> <td>031-853-9319 평일10~16시(점심시간12~13시 제외)</td> </tr> <tr> <td>경기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문의</td> <td>031-853-7873 평일10~16시(점심시간12~13시 제외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문의처	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사용 방법 문의	1577-8751 평일9~18시(점심시간12~13시 제외)	경기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문의	031-853-9319 평일10~16시(점심시간12~13시 제외)	경기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문의	031-853-7873 평일10~16시(점심시간12~13시 제외)
		구분	문의처							
		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사용 방법 문의	1577-8751 평일9~18시(점심시간12~13시 제외)							
		경기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문의	031-853-9319 평일10~16시(점심시간12~13시 제외)							
경기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문의	031-853-7873 평일10~16시(점심시간12~13시 제외)									